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을 통합·단순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개정(‘13.12.12.)시행에 따른 규칙위임사항 신설 및 기존 조문 정비
-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표준안에 대한 보완

2. 주요내용

□ 시간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등의 응시요건 신설

- 법 제27조제2항제2호(자격증 경임)·3호(연구·근무경력자 경임)·9호(학위소지자 경임)에 의한 시간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규칙으로 위임(영 §17④)
 - 시간제·한시임기제 경임시 자격증·근무경력·학위기준 신설(§14⑨, 별표5의3 신설)

□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 등의 응시요건 신설

- 법 제27조제2항제2호(자격증 경임)에 의한 전문경력관 응시요건(임용예정직 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규칙으로 위임(전문경력관규정 §6 1호)
 - 전문경력관 직위의 직무내용 다양성을 고려,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함(§14⑩ 신설)

□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응시자격 관련 특례규정 신설

- 직종개편 후 전직(관리운영직군→일반직 유사직렬) 시 전직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하되,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서류전형(+면접시험) 방법으로 전직이 가능토록 규정(특례규정 §5②)
 -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경과자(서류전형+면접시험)에 대한 전직시험 특례규정 신설(§17⑤, 별표10 및 별표10의2 개정)
 - 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에 구분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17⑥, 별표7 개정)

□ 일반직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

- 기능직 폐지 및 직렬 신설(운전, 방호, 위생, 간호조무, 조리, 시설관리, 속기)에 따른 일반직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 필요
 -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자격증을 일반직 자격증에 통합(별표 5 개정)
 - 신설직렬을 반영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개정(별표4 개정)
 - 방호직렬 신규임용전직시험 응시요건(신체조건) 신설(§15③, 별표4의2 신설)

□ 종전 기능직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 폐지

- 기능직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조문 삭제 및 관련 별표 개정
 - (조문개정)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5), 응시자의 제출서류(§6②), 응시수수료(§6의2), 응시연령(§8), 신규임용시험의 특전(§13의3),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14①,④),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15의2),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24)

- (별표개정)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별표 5의2),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별표 7의4),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별표 8),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별표 13),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별표 15)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생략 대상 개정

-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 신설('12.9.21)에 따른 회의록 작성 생략 개정(§3②)
 - 근속승진임용, 명퇴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전보심의, 파견연장, 대우공무원 선발,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임기제 임기연장 등

□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개정

- 임용령 개정('12.6.22 개정) 사항 반영,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개정(§6의2②)
 - 과오납 시,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 시, 7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 시

□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시 가산 대상 자격증 근거 신설

-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2호 경임 제외)에 응시하는 사람이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과목별 만점의 5% 범위내에서 가산(§13의3②)
- 표준안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시험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 등을 규정한 별표 7의2의 임용계급에 전문경력관 추가

□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규정 개정

-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재 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규정 개정(§24②)
 -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중 재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등록규정 신설

- 경채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도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어 오던 것을 공채시험 합격자의 등록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18조 ③ 신설)

□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 후임자 선발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8조 신설)

□ 면접시험 평정표 서식 개정

- 심층면접제도의 도입 등 면접시험 제도의 변경으로 면접시험 평정표 서식의 평정방법 등 변경 (§13의2①, 별지 11~12)

□ 공무원시험 본인 응시 확인용 신분증의 종류 다변화

- 공무원시험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으로 제도개선(별지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4년 6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55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제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제2차 시험”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7급 이상 : 20세이상

제8조제2호 중 “기능직 채용시험”을 “8급 이하”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의 제목 “(서류전형 기준)”을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 ②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삭 제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

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 3.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 ⑥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및[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 ⑧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

규칙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5의3]과 같다.

⑩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 2.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 3.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6] 및 [별표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을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전단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38조제4항”을 “영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를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7조의4제4항”을 “영 제7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삭 제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삭 제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별표4,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7의4,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3, 별표15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의2, 별표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11호서식, 별지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 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2. 삭제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정	운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술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잠수
해양수산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정 비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 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	기 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 경, 지적
방송통신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통신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 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 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 사(3)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 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직렬 \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의료기사(12) 치과위생사(12) 치과위생사(12) 방사선조사기(12) 일반소속직(특수) 일반소속직(1급) 일반소속직(2급) 일반소속직(3급) 일반소속직(4급) 일반소속직(5급) 일반소속직(6급) 일반소속직(7급)	임상병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의료기사(8) 치과위생사(8) 치과위생사(8) 방사선조사기(8) 일반소속직(1급) 일반소속직(2급) 일반소속직(3급) 일반소속직(4급) 일반소속직(5급) 일반소속직(6급) 일반소속직(7급)	임상병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의료기사(5) 치과위생사(5) 치과위생사(5) 방사선조사기(5) 일반소속직(1급) 일반소속직(2급) 일반소속직(3급) 일반소속직(4급) 일반소속직(5급) 일반소속직(6급) 일반소속직(7급)	임상병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의료기사(2) 치과위생사(2) 치과위생사(2) 방사선조사기(2) 일반소속직(1급) 일반소속직(2급)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조사기 일반소속직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3)	한약사		
	약 제		한약사(7)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3)	수의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대 기		위생사(7)	위생사(8)	위생사(5)		
	폐 기 물		환경측정분석사(7)	환경측정분석사(3)	환경측정분석사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시업용조종사(5) 항공기관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시업용조종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관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화 학	기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산업경영	기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 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 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 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 (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 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 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 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 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 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사(5), 치과위생사 (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류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제6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행정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야 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설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향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향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향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향해	기술사(조선) 1·2급 향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향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향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자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약 무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약 제			
간 호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	수 질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시 설			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리	조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 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 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 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 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15>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임상심리사2 급	물류관리사, 철도교 통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 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
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 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계 가 공, 보 일 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 기 능 장 : 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p>공 업</p>	<p>기계운전</p>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 철도교통안전관리사</p>

공 업	조 선	<p>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p>	<p>기사자격증 기사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야 금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공 업	일반화학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 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p>
	잡 업	<p>기사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식물검역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농 화학	<p>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p>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에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에,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 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p>보 건</p>	<p>보 건</p>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p>
<p>식품위생</p>	<p>식품위생</p>	<p>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p>의료기술</p>	<p>의료기술</p>	<p>기술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p>
<p>환 경</p>	<p>일반환경</p>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환경	수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p> <p>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대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기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축	<p>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측지	<p>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시설계	<p>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기술	<p>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계 농업기계	<p>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능사 : 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공업연구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p>	
	섬유	<p>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p> <p>기능장 : 염색</p> <p>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화학	<p>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p> <p>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p>	
	물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업	<p>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근충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농촌지도	잠업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산업기사 : 섬유가공,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업연구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농촌지도	축 산		
녹지연구	임 업	<p>기술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p> <p>기술장 : 산림</p> <p>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p> <p>산업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능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p>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p>산업기사 : 축산</p> <p>기능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p>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 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 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 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 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직무분야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경 감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위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준 위 위 사	상 중 사 사	하 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 적용 대상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 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 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 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 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관 사·검 사		9호봉 이상	6호봉 이상	4호봉 이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상	7급	8급	9급 이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사 학 위 소 자 학 위 소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 비 고 : 1. 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 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별표 9] <개정 96.3.26, 07.5.23>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 금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해양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산 물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검 사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중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제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잡업, 잡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24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구분	5급	6급	7급	8급
일반직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경찰공무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정보원 직 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시간 선택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 이하	“나”군 24호봉 이상	“나”군 23호봉 이하	“다”군 25호봉 이상	“다”군 24호봉 이하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 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 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 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 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 공기관, 항공기계, 기계안전, 공장 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 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 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 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 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 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 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 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 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 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 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 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 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 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 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 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 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 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 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 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 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 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 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 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 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 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 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 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 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 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전 업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금 업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업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업 가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학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자 업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축 업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산 림 업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수 의 의)	수의사		
해양 (수 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직렬 \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 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 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해양운영 선박안전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구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작용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작용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농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해양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직렬	계급	연구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직렬	계급	지도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증지 첨부란	②주 소		③전 화 : 핸드폰 :						
	④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종사) 년 월 일까지						
	⑤선 택 과 목	선택 1	선택 2	선택 3	⑥가 산 기 표 란	자격1	자격2	자격3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
	⑧응 시 계 급	급		⑩성 명	(한 글)			⑫응시자 우무인	
⑨응 시 직 렌	(직)		(한 자)						
※응시 번호			⑪ 주민등록 번호						

간 인

⑬응 시 계 급	급	⑮제 회 시험		⑮ 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⑭응 시 직 렌	(직)	⑯성 명	(한글) (한자)	
※응시 번호		⑰ 주민등록 번호		

간 인

※	⑲응 시 계 급	급	⑳제 회 시험		㉕ 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㉑응 시 직 렌	(직)	㉒성 명		
	㉓선 택 과 목	선택 1	선택 2	선택 3	
	※응시 번호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1203 - 1 1A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120g/

m²
1978. 10 . 13 승인

응시원서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㉓...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㉔...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④...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⑤...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른 것.
6. 가산기표란 ⑥⑦...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⑰...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㉒...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⑱, ㉕...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㉖...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 등 지참 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깥편에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 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명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 12호 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감 재 정	본인필적 :	응시번호	
용 란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2013.12.12.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능직공무원 용어 삭제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4년 6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56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동 규칙 근거조항 및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동 규칙 근거조항 및 관련조항을 변경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6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57호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제7항”을 “제17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8조제1항”을 “제1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같은조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제18조제4항”을 “제17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폐지규칙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12.12.)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일반직(임기제)으로 재 분류되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군산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 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되던 「군산시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규칙 폐지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폐지에 따라 군산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

군산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4년 6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58호

군산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폐지규칙

「군산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가목 의미 명확하게 규정

2. 주요내용

-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에 대한 규정 명확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4년 6월 16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59호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전토지가 그 위치에 해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2필지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위치에 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각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나. 종전토지가 그위치에 해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에 위치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길이가 긴 토지를 우선으로 할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 2014-936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도법 제16조 빗물관련조항 폐지에 따른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폐지 및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신설에 의거 「군산시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으로 폐지된 기존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에 규정된 상수도요금 감면사항을 본 규칙에 규정하고,

나. 「2014년 군산교육지원청 신규교육협력사업」 건의사항에 따른 공립 단설 유치원 및 초·중·고교 (특수학교 포함) 상수도사용료 감면사항을 새로 정하려는 것임

다. 기타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수도급수조례 제34조」 와 「군산시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 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수도요금등에 부과되는 상수도요금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상수도요금을 업종별로 20~65%감면

(2) 폐지된 빗물이용시설설치 조례에 규정된 기존 감면사항을 규칙에 규정 (안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기존 모범업소 및 맛집 상수도사용료 30%감면사항을 '가'목으로 분류하고 (안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 관내 공립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의 상수도 사용료 20% 감면 지원 (일반회계 예산지원) 사항을 '나'목에 신설
(안 제37조 제1항 제4호 나목)

라. 용어정비 : 당해→그, 공지상→공터, 때→경우, 당해→해당, 한→한정, 전월→지난달, 대하여→대해서, 기상→기록, 과년도→지난해, 기간동안→기간에, 기타→그 밖에, 전일→전날

※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7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군산시청 수도과 (전화 : 454-5360, FAX : 454-534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요금계장 강성식, 주무관 황희애 (전화 454-53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공공시설등”을 “공공시설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등)”을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공사비등을”을 “공사비 등을”으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사비등”을 각각 “공사비 등”으로, “공사비등을”을 “공사비 등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불가피할때”를 “불가피할 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공지 상”을 “공터”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변경하는 때”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 한”을 “경우에 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봉인상태”를 “봉인 상태”로 한다.

제21조제6항제1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전월”을 “지난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업종”을 “해당업종”으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장한다”를 “장부 기록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현년도 분”을 “올해 분”으로, “과년도”를 “지난해”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철거한 때”를 “철거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간동안”을 “기간에”로 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을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관련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란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한 시설의 상수도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신청한 경우

1)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제18호]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감면범위는 상수도의 업종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업종구분	상수도 요금 감면범위
가정용	65% 범위내
일반용	40% 범위내
목욕용	30% 범위내
공업용	20% 범위내

나. 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상수도 사용량 중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20%를 공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단, 감면량은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1)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17호 서식]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측장치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인은 시장이 한다.

3) 계측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치운영자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폐업,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업, 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5) 중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 검침시 병행 검침한다. 검침 및 사용수량 적용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대하여는 당해”를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좋은 식단체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하며, 이 경우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 지원한다. 단, 감면대상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관내 공립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로 상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 지원한다.

제37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제37조제1항관련)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수도 수전현황	수용가번호			
	구 경	mm	업 종	
빗물사용 현 황	시설위치		시설용량	
	사용용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년월일	

「군산시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8조 및 「군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p> <p>1. (생략)</p> <p>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 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수용소, 긴급 공공시설등에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p>	<p>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공 공시설 등----- -----</p>
<p>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등) ① ~ ⑤ (생략)</p> <p>⑥ 급수신청자가 공사비등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u>당해</u>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u>공사비등의 변동등</u>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u>공사비등을</u>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공사비 등을 ----- ----- ----- ----- <u>그</u> ----- ----- ----- . ----- <u>공사비 등</u> ----- ----- <u>공사비</u> <u>등을</u> ----- -----.</p>
<p>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p>	<p>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p>

공용급수설비는 기존공용 급수 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설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수도계량기 설치위치)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2. (생략)
-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공지 상에 설치한다.

② (생략)

제14조(급수업종 변경)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급수업종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한다.

② ~ ④ (생략)

제15조(급수 수전번호) 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는 즉시 수도

 ----- 불가피할 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도계량기 설치위치) ① -----

 -----.

- 1.·2. (현행과 같음)
- 3. ----- 공지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급수업종 변경) ① -----

 ----- 변경
하는 경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급수 수전번호) ① -----

전신설대장에 등재하고 읍·면·동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 번호를 당해 수전의 수전번호라 한다.

② ~ ④ (생략)

제17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② (생략)

③ 급수 사용자의 신청 없이 건물 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당해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20조(계량기 검침)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 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검침할 수 있다.

②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해
당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당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계량기 검침) ① -----

-----.

경우에 한정-----
-.

② -----
-----.

시간과 조례 제31조제2항 별표 제7호의 구경별 출수량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

제25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5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

-. -----
----- 해당 -----

-----.

제31조(가산금) ① (생략)
②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주 체납액이 속하는 년도에 기장한다.

제31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장부 기록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수납소인) ① (생략)
② 수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당해 납입필 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수납소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현년도 분은 현년도 대장에 과년도 분은 이월액 정리부에 소인한다.

④ 올해 분----- 지
난해 -----
-.

제35조(임시급수) ① 조례 제31조

제35조(임시급수) ① -----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감면

가.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적용

나. 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상수도 사용량중에서 중수도

--.

1.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관련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한 시설의 상수도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신청한 경우

1)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제18호]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감면범위는 상수도의 업종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업종구분	상수도 요금 감면범위
가정용	65% 범위내
일반용	40% 범위내
목욕용	30% 범위내
공업용	20% 범위내

나. 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상수도 사용량 중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20%를 공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단, 감면량은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1)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17호 서식]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계측장치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인은 시장이 한다.(3) 계측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치운영자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폐업,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업, 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5) 중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 검침시 병행 검침한다. 검침 및 사용수량 적용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동

사용량의 20%를 공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단, 감면량은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1)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17호 서식]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측장치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인은 시장이 한다.

3) 계측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치운영자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폐업,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업, 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5) 중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 검침시 병행 검침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필요시 관계서류 등

3. (생략)

4.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란 좋은 식단체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하며, 이 경우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 또는 지원한다. 단, 감면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생략)

② 제1항제4호의 감면적용은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확보하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3. (현행과 같음)

4.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좋은 식단체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하며, 이 경우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 지원한다. 단, 감면대상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관내 공립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로 상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 지원한다.

5.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범위 안-----
-----.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료 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 1. · 2. (생략)

제39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생략)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 지역 주민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7. 등기촉탁승낙서 및 기타 등기 또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

제40조(특수가압 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 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 ⑥ (생략)

----- 각 호 -----
--.

- 1. · 2. (현행과 같음)

제39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 각 호 -----

-.

- 1. ~ 6. (현행과 같음)

7. ----- 그 밖에 -----

제40조(특수가압 시설의 운영) ① -----
----- 전날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2014-65호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

1. 군산시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완료하여 동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37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 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16일

군 산 시 장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합 계	46,077.4	-	46,077.4	100.0		
현지개량 용지	33,208.4	감)1,049	32,159.4	69.8		
정비 기반 시설 용지	소계	12,869	증)1,049	13,918	30.2	
	도로	8,655	증) 29	8,684	18.9	
	주차장	1,410	증) 21	1,431	3.1	
	공공공지	2,414	증)654	3,068	6.7	
	경로당	260	증) 32	292	0.6	
	공동작업장	-	증)182	182	0.4	
	화장실	130	증)131	261	0.5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24	10	국지 도로	158 (158)	미원동 337-3 중로1-3	미원동 278-3 소로3-51	일반 도로		전북고2012-56 ('12.3.23)	당초신설
기정	소로	2	48	8	국지 도로	170 (170)	미원동 302 소로3-737	미원동 381 소로1-46	일반 도로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9	8	국지 도로	87 (87)	미원동 272 소로3-51	장재동 159-2 소로3-52	일반 도로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52	8	국지 도로	414	미원동 32 중로1-3	장재동 212-4 소로1-48	일반 도로		건고525 ('67.7.25)	당초누락
변경	소로	2	52	8	국지 도로	414 (116)	미원동 32 중로1-3	장재동 212-4 소로1-48	일반 도로			노선일부 편입
기정	소로	2	975	8	국지 도로	23 (23)	미원동 221 대로3-4	미원동 238-4 소로3-736	일반 도로		전북고2012-56 ('12.3.23)	당초신설
변경	소로	2	975	8	국지 도로	30 (30)	미원동 221 대로3-4	미원동 239-5 소로3-736	일반 도로			노선연장
기정	소로	3	51	6	국지 도로	345 (155)	미원동 206 대로3-4	장재동 소로1-46	일반 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3	736	6	국지 도로	312 (312)	미원동 316 소로2-52	미원동 295 소로2-52	일반 도로		전북고2012-56 ('12.3.23)	당초신설
변경	소로	3	736	6	국지 도로	295 (295)	미원동 306-6 소로2-52	미원동 290-3 소로2-52	일반 도로			노선단축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738	6	국지 도로	34 (34)	미원동 242-8 소로3-736	미원동 244-4 소로3-51	일반 도로		전북고2012-56 ('12.3.23)	당초신설
변경	소로	3	738	6	국지 도로	41 (41)	미원동 290 소로3-736	미원동 244-4 소로3-51	일반 도로			노선연장
기정	소로	3	739	4	특수 도로	36 (36)	미원동 233-2 중로1-3	미원동 235-9 소로3-73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012-56 ('12.3.23)	당초신설
변경	소로	3	739	4	특수 도로	43 (43)	미원동 233-2 중로1-3	미원동 306 소로3-736	보행자 전용도로			노선연장
기정	소로	3	740	4	특수 도로	40	미원동 226 대로3-4	미원동 235-9 소로3-73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012-56 ('12.3.23)	당초신설
변경	소로	3	740	4	특수 도로	40	미원동 226 대로3-4	미원동 235-9 소로3-736	보행자 전용도로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741	4	특수 도로	40	미원동 211 대로3-4	미원동 242-8 소로3-73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012-56 ('12.3.23)	당초신설
변경	소로	3	741	4	특수 도로	40	미원동 211 대로3-4	미원동 242-8 소로3-736	보행자 전용도로			선형변경

* () 는 구역내 도로임

○ 주차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8	주차장	미원동 337번지 일원	746	증)10	756	전북고2012-56 ('12.3.23)	
변경	69	주차장	미원동 290번지 일원	664	증)11	675	전북고2012-56 ('12.3.23)	

○ 공공공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3	공공공지	미원동 303번지 일원	2,277	감)566	1,711	전북고 2012-56 ('12.3.23)	
변경	14	공공공지	미원동 241-3번지 일원	137	증)688	825	전북고 2012-56 ('12.3.23)	
신설	32	공공공지	미원동 239번지 일원	-	증)532	532		

○ 경로당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경로당	군산시 미원동 302번지 일원	260	증)32	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공간 • 공동체 활동증진 또는 지속적인 사회 경제적 장점을 위한 물리적 자원시설

○ 화장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화장실	군산시 미원동 236-8번지 일원	130	증)131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 설치로 인근주민에게 이용 편의 제공

○ 공동작업장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동 작업장	군산시 미원동 291-10번지 일원	-	증)182	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을 통한 자력 생활의지 개선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주 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지급

4. 세입자의 주거대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주거 이전비, 이사비등 지급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율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상업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A, B, D, F, G, K, L, M, O, P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변 경 A, B E, G H, M N, Q R, L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 주거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Q, R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허용 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공용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학교위생정화구역에 따른 금지시설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변경	S, T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허용 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공용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학교위생정화구역에 따른 금지시설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 기반시설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C, E H, I J, N	용 도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또는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따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변 경	C, F I, J K, O P	용 도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또는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따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지장물 철거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발생하는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성상별, 재활용 가능여부 등으로 분리, 수집 하여 위탁처리 업체로 하여금 가능한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처리토록 함
-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등 군산시 쓰레기 처리 계획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

7의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환경 현 황	·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경계로 500m 인근에 초등학교 2개소 (미원초교, 월명초교) 및 중학교 1개소(군산중), 고등학교 1개소(군산기계공고), 대학교 1개소(서해대학) 가 위치하고 있음		
교육환경 보호계획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dB(A)]	65이하	50이하
	진동[dB(V)]	70이하	65이하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수 있도록 계획		

8. 시행규정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군산시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 2) 정비사업의 시행년도 및 시행방법
 - ▶ 시행년도 : 2012년 ~ 2014년
 - ▶ 시행방법 : 현지개량 방식
- 3)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사업비 : 9,383백만원 (국비 3,657 시비 5,726)


- 4) 고시 및 통지의 방법
 - ▶ 고시 : 시보,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 ▶ 통보 : 개별통보
- 5)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 감정평가에 의함
- 6)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군산시 미원동 311번지 일원
 - ▶ 면 적 : 46,077.4m²
- 7)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 ▶ 성 명 : 군산시장
- 8)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별첨
- 9)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되는 국·공유지 조서 : 별첨
- 10) 기타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4-66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16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7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4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3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공고 제 2014 -946호

군산 임피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 임피농공단지에 대하여 준공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군산 임피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상호 및 대표자 : 군산시장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농공단지의 위치 :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일원
- 농공단지의 면적 : 239,187m²

4. 준공인가연월일 : 2014. 6. 11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단위 : m²)

구 분		개발면적	분 양	비 고
합 계		239,187	176,012	
산업시설용지		176,012	176,012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3,175		
	공동이용시설	1,752		
	배수지	225		
	저류지	2,700		
	도로	27,041		
	녹지	31,457		